



1) 납품업자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자발적 요청에 의해 거래 중단, 매장 변경 시 대규모 유통업자에게 거래 중단, 매장 변경에 대한 책임이 없음에도 대규모 유통업자가 매장 설비비용을 보상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음
2) 거래 중단, 매장 위치·면적 등의 변경 사유가 대규모 유통업자에게 있는 경우에만 매장 설비 비용을
보상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참조 : 유통거래과, 전화 (044) 200-4621, 팩스 (044) 200-4659, 이메일
sham23@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